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747

제안년월일 : 2021년 9월 8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2021년 8월 11일 권수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647)과 2021년 8월 1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2654) 이상 2건을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21년 9월 8일)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 서울형 유급병가의 대상자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등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이용하거나 검진을 받을 때, 서울형 유급병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민원인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현행화하기 위해 관계법령 수정사항 등을 반영함.

3. 대안의 주요 내용

○ 유급병가 지원대상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자’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유급병가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제3항)

○ 조례의 적용조항 오류를 현행화함(안 제5조, 제6조 및 제11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이의신청기간 등을 정비함(안 제6조).

○ 위원회의 회의록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및 제16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

제5조제1항 중 “제5조 및 제6조”를 “제4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를 “제5조”로, “30일”을 “60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보건소장이 의뢰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를 “접수한 때에는”으로 한다.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를 “제8조”로 한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자문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3조(유급병가 한시적 지원 및 적용기간 특례) 제4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유급병가지원은 공포한 날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회 이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실시한 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② (생 략)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시민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일에 한하여 서울형 유급병가를 지원할 수 있다. 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외래 치료 또는 검진을 받은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
②· 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7조의 지원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① ------ 제5조 ---------- ---------- ---------- 60일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지원기준 적용에 관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 ---------- ---------- ----------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건소장이 의뢰한 검	④ ----- 제3항에 따른 --------

현 행	개 정 안
토의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접수한 때에는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생 략)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